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 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 5.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흔히 ‘김영란 법’이라고도 지칭되고 있습니다. 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합니다)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이하 “시행령 안”이라고 합니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최종적인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행령 안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시행령은 아니지만, 정부의 기본입장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저희법인의 [2015. 3. 16.자 Legal Update](#)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직자에게 제공 가능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기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1)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2) 직무와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금액 이하(즉,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하이고 매 회계연도 합산액도 300만원 이하)인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각 부과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3조제5항 제1호).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 의뢰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금품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를 허용합니다(법제8조 제3항).

시행령 안은 이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범위를 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된다는 것입니다.¹ 여기서 ‘음식물’이란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을, ‘선물’이란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경조사비’란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 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 음식물을 말합니다. 음식과 선물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5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부조금과 선물, 음식물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여 경조사비의 한도(1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안 제6조).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 행동강령은 식사 3만원, 선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어서 그보다는 약간 금액이 상향되었는데, 국민권익위는 현재의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금액을 시행령 안에 맞도록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2016. 5. 9.자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1. 시행령 안에서 허용되는 음식, 선물, 경조사비의 한도가 3만원, 5만원, 10만원 “이하”인지, 아니면 위 각 금액 “미만”인지가 불명확합니다. 다만,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 행동강령이 허용되는 금액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하”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2. 공직자의 외부강연 사례금 기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 내지 직위와 관련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서 한 강의, 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받았음에도 지체없이 반환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법제10조 제5항, 제23조 제4항).

시행령 안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받을 수 있는 강연료의 상한은, 1시간 혹은 1건의 강연이나 기고를 기준으로, 장관급은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이상은 30만원, 5급이하는 20만원입니다.² 그리고 강연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강연료는 추가되는 강의 시간과 상관 없이 위에서 기재한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합니다(시행령 안 제9조).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직급의 구별이 없이 시간당 100만원이 한도입니다.³(시행령 안 제9조).

3. 부정청탁 사항의 공개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법제7조 제7항).

시행령 안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부정청탁으로 처벌을 받았는지와 부정청탁 예방효과와 달성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안 제5조 제1항). 그리고 공개 대상에는 부정청탁의 일시, 목적, 유형, 소속부서, 조치 내지 제재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부정청탁에 대한 조사 내지 재판 등의 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하되 인터넷 공개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안 제5조 제2항).

4. 유의할 점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에 대하여는 여전히 불확실한 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대한변호사협회는 청탁금지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2015헌마236)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법 시행일인 2016. 9. 28. 이전에 그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인으로서, 위 법의 일부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둘째, 청탁금지법의 상한 이내의 금품을 제공한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도 면제되는 것인지 문제됩니다. 즉, 청탁금지법 시행령 안에서 규정하는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지급하면 형법상 뇌물죄 등의 처벌에서도 제외되는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판단되어야 하겠으나, 현행법상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현재까지 대법원은 뇌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금액의 다과 보다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의 존재 여부를 중시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금품을 제공했다라도 여전히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기관장은 40만원, 임원은 30만원, 그 외 직원은 20만원 입니다.

3. 다만,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1회당 100만원이 한도입니다. 그리고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강연이 아닌 '기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고 1건당 100만원이 한도입니다.

당할 것입니다.

셋째, 청탁금지법 해석 자체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공직자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 총 식사대금을 참석자 숫자로 나눈 금액이 한 명의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금품이라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대기업의 여러 부서에서 각자 따로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했을 경우 기업 전체를 하나의 제공자로 보아 금액을 합산해야 하는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기업들은 청탁금지법 및 그 시행령의 입법추세를 주시하여 대관업무나 홍보, 마케팅 활동 기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재검토와 수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공직자등을 상대로 의견을 표명할 때 법에 따른 절차가 준수되는지 주의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의 양벌규정을 적용받아 기업 자체가 처벌되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하여, 평소 소에 임직원을 상대로 한 정기적이고도 실질적인 준법교육을 시행하는 등 충실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두식 대표변호사	TEL. 02 316 4223	E-Mail. dskim@shinkim.com
● 이건주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211	E-Mail. kjlee@shinkim.com
● 이용성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028	E-Mail. ysulee@shinkim.com
● 최성진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405	E-Mail. sjinchoi@shinkim.com
● 류명현 선임외국변호사	TEL. 02 316 4276	E-Mail. mhryu@shinkim.com
● 홍탁균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085	E-Mail. tkhong@shinkim.com